

5. 地籍法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568號 1995. 4. 6

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분”이라 함은 토지대장부분·지적도부분·임야대장부분 및 임야도부분을 말한다.
4. “측량성과”라 함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에 등재된 측량결과를 말한다.
5. “측량성과도”라 함은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6.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 ①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경우에 주된 지목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등의 부지와 주된 지목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다른 지목의 협소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이거나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반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 표시로 구분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제3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본문중 “지반 지역내의 인접지의 본번에 “-1”” 또는 “-2” 등으로 표기되는 부번을”을 “지반 설정지역안의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번지역의”를 “지번설정지역의”로 한다.

제3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단서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대지인”을 “대인”으로 한다.

제3조 제7항(중전의 제6항)중 “지번지역안의 일부에 대한 지번경정 및 ”을 “지번설정지역안의 일부에 대한 지번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로, “제2항의”를 “제6항의”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임야대장에”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로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중 “법 제5조 제1항의”를 “법 제5조 제2항의”로 하고, 동항 제2호중 “1필지의 용도가”를 “1필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로, “사용목적에”를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 제1호중 “토지는”을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축순을 재배하는 토지는”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미곡·연·미나리·택사·왕골등의”를 “벼·연·미나리·왕골등의”로 하며, 동조 제3호중 “과수류

를”을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등”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으로 한다.

제6조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제6조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9.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제6조 제11호중 “토지는”을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으로 하고, 동조 제15호중 “수로 및”을 “수로·둑 및”으로, “수로의 부지는”을 “수로는”으로 하며, 동조 제16호중 “토지는”을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으로 한다.

제6조 제18호중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제6조 제2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적·고적·기념물 등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등의 구역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잡종지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남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부분의 정리와 열람등) ①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부분의 정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관할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읍·면장은 지체없이 부분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부분의 열람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수수료는 무료이다.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관청은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의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등은 그 등록번호)
5. 건물의 명칭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지번지역”을 “지번설정지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연명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로, “측량원도”를 “측량결과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본문중 “조제”를 각각 “작성”으로 하고, 동조본문 단서중 “비치된”을 “작성된”으로 하며, 동조 제1호중 “경정할”을 “변경할”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

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적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화일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내무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⑤내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지적전산정보자료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승인을 얻은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3조중 “소관청은”을 “소관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화일의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은”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를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등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토지이동의 신청”을 “토지이동등의 신청”으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신규등록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전환신청)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에서 “등록전환할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개간·건축물의 사용검사등으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토지로서 임야대장 및 임야도로부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야 할 토지를 말한다.

③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제17조(분할신청)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 한한다.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③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중 그 지목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로 본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밖의 토지인 경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지목변경신청)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토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3.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③법 제21조 및 이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택지개발·도시재개발사업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사준공 전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로 보아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기타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등”을 “지역개발사업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 제1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제21조의 제목 “사업신고등”을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신고”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적공부정리의 시기”를 “지적공부의 정리시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완료된”을 “준공된”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점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경우

제24조의 제목 “측량절차”를 “지적측량절차”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②기초측량은 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사진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등에 의한다.

제2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세부측량은 법 제25조 제2항 제1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를 위한 측량을 제외한다)·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제24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제1호중 “측판측량법 또는 사진측량법”을 “측판측량방법 또는 사진측량방법에 의한다”로 하고, 동항 제2호 본문중 “경위의 측량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을 “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한다”로 하며, 동호단서중 “경위의 측량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을 “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측판측량법 또는 사진측량법으로 할 수 있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측판측량방법 또는 사진측량방법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분할에 따른 경계는 지상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하게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1항중 “지적측량성과는 측량부 측량원도”를 “측량성과는 측량부·측량결과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지적측량성과”를 “측량성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기초점측량성과의 사용·관리”를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 보존·관리”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기초점측량성과의”를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로 하며, 동조 제1항 제1호중 “도근점”을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기초점”을 “지적삼각점”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도지사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의 측량성과는 소관청이 내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지적삼각점의 측량성과는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제3항 제4호중 “거리대수”를 “거리”로 하고, 동조 제4항 제3호중 “측량연월일”을 “설치 또는 재설치연월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중 “기초점”을 “지적측량기준점”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기초점표석 또는 표지는 소관청이 관리하거나,”를 “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는 소관청이 관리하되, 그 일부를”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 및 후단중 “기초점표석”을 각각 “지적측량기준점표석”으로, “기초

점”을 “지적측량기준점”으로, “법 제30조의”를 “법 제30조 제1항의”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기초점표석”을 “지적측량기준점표석”으로 하며, 동조 제4항 본문 및 단서중 “기초점표석”을 각각 “지적측량기준점표석”으로 한다.

제33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읍소재지이상의 도시지역

제3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적삼각측량은 측량법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이하 “삼각점”이라 한다)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한다.

제34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의 시·도명중 2자를 채택하고, 특별시·광역시·도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 정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중 “경위의 측량법”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을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제2호중 “10만분의 1미터”를 “평균치의 10만분의 1”로 하고, 동조 제4항 본문중 “대수 또는 진수”를 “진수”로

“평균계산방법 또는 망평균계산방법”을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으로 하며, 동항표중 “대수 또는 진수”를 “진수”로 한다.

제3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적삼각보조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다.

제36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6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7조 제1항 본문중 “교회법”을 “경위의 측량방법과 교회법”으로 하고, 동항 제4호표중 “대수 또는 진수”를 “진수”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법”을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교회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다각망도선법”을 “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다각망도선법”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중 “도선법, 교회법 또는 다

각망도선법으로 한다”를 “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도선법·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한다”로 한다.

제38조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1호중 “기초점간”을 “지적측량기준점간”으로 한다.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도선법으로 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8조 제7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하여 교회법으로 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8조 제8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여 다각망도선법으로 도근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9조 제1항 본문중 “도선법과 다각망도선법”을 “경위의 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과 도선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지역”을 “수치지적부시행지역”으로 하며, 동항 제4호중 “3천분의 1미터”를 “평균치의 3천분의 1”로 하고, 동항 제5호중 “양각과 부각”을 “올려본 각과 내려본 각”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교회법”을 “경위의 측량방

법과 교회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중 “경위의 측량법”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측관측량법”을 “측관측량방법”으로, “비례법으로 한다”를 “비례법에 의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 본문중 “측관측량법”을 “측관측량방법”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본문중 “측관측량법”을 “측관측량방법”으로, 동항 제1호중 “기초점”을 “지적측량기준점”으로 하고, 동조 제5항 내지 제7항중 “측관측량법”을 각각 “측관측량방법”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중 “측관측량법”을 “측관측량방법”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측량원도”를 “측량결과도”로 하며, 동항 제3호중 “기초점”을 “지적측량기준점”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경위의 측량법”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하며, 동항 제2호 본문중 “측량원도”를 “측량결과도”로 하고, 동호단서중 “측척변경시행지역의 측량원도 축척은 500분의 1로,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의 측량원도 축척은 1천분의 1로 한다”를 “측척변경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1필지의 면적이 광대한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기초점”을 “지적측량기준점”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 본문중 “측관측량법에서 기초점을”을 “측관측량방법에서 지적측량기준점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측관측량법”을 “측관측량방법”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경계복원 측량기준등) ①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에 있어서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에 거리측정착오·측량성과의 결정착오 또는 경계오인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이 정정된 후 측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걸리거나 부득이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경계복원측량신청등) ①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계복원측량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인접토지소유자의 측량참여동의서 또는 측량집행동의서를 첨부하여 대행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거부 또는 부재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측량참여동의서 또는 측량집행동의서의 첨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행법인이 경계복원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측량신청인에게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복원측량결과 복원된 경계점이 현황과 같을 경우에 인접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제4항 단서중 “측량원도”를 “측량결과도”로 한다.

제47조 제1항 제1호중 “경위의 측량법”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1호·제2호, 동조 제3항 제3호·제4호 및 동조 제4항 제2호중 “산출면적”을 각각 “측정면적”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중 “분할지의”를 “분할토지의”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신규면적오차를 배부한 산출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그 합계가 원면적에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소요자리수미만의 수가 큰것부터 차례로 올려야 한다. 다만, 소요자리수미만의 수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린다.

$$r = \frac{F}{A} \times a$$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

적, A는 측정면적합계 또는 보정면적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제50조의 제목중 “조제”를 “작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중 “기초점”을 각각 “지적측량기준점”으로 한다.

①도면은 측량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정리하여야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2호중 “지번지역내에”를 “지번설정지역안에”로 한다.

1. 토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소측의 도면으로는 측량성과를 정밀하게 등록하거나 결정하기 곤란한 때

제52조의 제목 “시행공고”를 “측척변경시행공고”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지적의 결정”을 “토지표시사항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고, 지목은 토지의 용도에 부합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54조의 제목 “표시의무”를 “경계표시의 의무”로 한다.

제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받을 자가 행방불명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64조 제2항중 “지적위원회”를 “중앙지적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징계”를 “징계의 사유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지적위원회”를 “중앙지적위원회”로 한다.

제66조 제2항중 “지적위원회”를 “중앙지적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지적위원회”를 “중앙지적위원회”로 하며,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로써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6조 제4항 및 제5항중 “지적위원회”를 각각 “중앙지적위원회”로 한다.

제67조 제1항 제4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6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면등의 작성 및 제작성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소유권의 정리) 소관청은 관할등기소의 등기필통지가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등기권리증사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의 정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의 제목중 “직권정정”을 “직권정정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제7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48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제7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8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요하는 경우

10.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을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환산시에 잘못 등록된 경우

제7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경계 또는 면적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표시사항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그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중 “토지이동”을 “신규등록 및 토지의 이동”으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소관청에”를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로 한다.

제7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7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무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77조 제1항 제1호중 “지번경정승인”을 “지번변경승인”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재조제승인”을 “재작성승인”으로 한다.

제7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시·군·구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소관청에 위임한다.

제78조의 제목 “지적위원회의 구성”을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을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며, 회의준비, 회의록작성·비치, 회의결과에 따른 업무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한다.

제79조의 제목중 “지적위원회”를 “중앙지적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지적위원회의”로 하며, 동조 제5항 제1호중 “법 제42조 제2항 제4호”를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법 제4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있어서”를 “법 제4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있어서”로 한다.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현지조사자 지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 또는 대행법인에 소속된 지적기술자를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의3(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등)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등에 관하여는 제78조 내지 제7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내무부”는 “시·도”로, “지적과장”은 “지적업무담당과장”으로, “내무부장관”은 “도지사”로 보고, 제79조 제5항 제2호중 “법 제4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는 “법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로 본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등) ①법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42조의2 제2항 제3호의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등) ①법 제4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사안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4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의결서를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4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청구등) ①법 제4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내무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의결서 사본

2. 재심사청구사유

②법 제42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 사안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를 송부받은 내무부장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3(지적측량적부심사에 따른 등록사항정정등) ①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송부받은 도지사는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법 제42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당해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를 한 때에는 제8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지의 등기축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69호 지적법중개정법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기축탁은 2005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지적법의 개정(1995.1.5, 법률 제4869호)으로 다른 행정기관이나 일반인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이용승인의 절차를 정하고 경계복원을 위한 측량은 원칙적으로 인접토지소유자가 측량에 참여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2조의2).
- 나.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지적도로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 제3항).
- 다. 토지구획정리·택지개발·도시재개발사업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사준공전이라도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 제3항).
- 라. 토지분할에 따른 경계는 건물을 걸리게 하거나 관통할 수 없도록 하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와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었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입등을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외로 함(영 제26조 제2항).
- 마. 경계복원측량신청시에는 인접토지소유자의 측량참여동의서 또는 측량집행동의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되, 거부 또는 부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45조의2).
- 바. “조수”등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바닷물”등 쉬운 용어로 변경함(영 제6조 제7호 및 제24호).
〈법제처 제공〉